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제60조의 요약

- 각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12월말 법인은 다음 연도 3월 31일)에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신고함(세액=일반법인세⊕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도 해당).
-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신고시의 필수제출서류(빠지면 무신고로 봄)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제3호서식임)) 5개 서류 중 어느 하나라도 미첨부시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적용. 기타 첨부서류는 빠져도 무신고는 아니며, 외부감사대상법인의 경우는 현금흐름표와 원화재무제표를 제출할(단, 미제출이라도 가산세는 없음).
 - 합병·분할로 법인해산시 피합병법인·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재무상태표와 합병법인 등의 승계자산 및 부채명세서
- 소득금액없거나 이익적어 결손금있는 법인도 신고서제출 의무적용함(무신고가산세 부과).
- 외부감사대상 법인이 결산미확정된 경우 신고기한 연장신청하면 1개월 연장됨(연장기간 동안 하루 0.03%의 이자상당액이 부과되며 연장신청은 신고기한 종료 2주전까지 신고).

●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③ 제1항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2010. 12. 30 개정)

- ④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1.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재무상태표와 합병법인들이 그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승계한 자산 및 부채의 명세서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그 신고서에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2. 30 개정)
-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및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사인(監査人)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 ⑧ 제7항에 따라 신고기한이 연장된 내국법인이 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기한 연장일수에 금융회사 등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한 연장일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진 날(연장기한까지 신고납부가 이루어진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연장된 날까지의 일수로 한다. (2010. 12. 30 개정)

Ⅰ. 과세표준의 신고

1. 본 조의 개관

1) 법인에 신고납부 기본요건과 절차

법인세 과세를 위해 종전의 부과과세제도와는 달리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한 현행 법인세법 체계에서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자진신고는,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기본적 법률절차로 보아,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3개월 말이 되는 날까지)에 당해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소정서류를

첨부한 신고서 등의 서면으로 자진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외감대상 법인이 감사 미종결로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 연장 신청으로 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법인세신고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및 세무조정계산서와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원화재무제표(외부감사대상법인만) 등을 과세표준과 세액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과세표준신고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필수적 서류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일반적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서만 제출하면, 나머지의 필수적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무신고로 보지 않는다. 이밖에 관할세무서장 등은 법인의 신고서류에 미비나 탈루가 있으면 이를 보정요구할 수 있다.

2) 법인에 과세표준신고의 방법론

① 신고납세제도의 개념 및 의의

본 조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감사미확정시 1개월 연장 가능)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의 자진신고납부제도의 대응개념으로 정부(관할세무서 등)의 부과과세제도가 있는데, 이는 관할세무서가 법인의 장부나 경영활동서류에 근거하여 조사하고 결정·경정하여야 세액이 확정되고 과세관계가 종결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자진신고납세제도하에서는 소정기일내에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장부 등에 의거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면 과세관계가 종결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신고납세제도하에서 정부의 업무부담이 줄어들며 기업의 자율에 맡기면서 세무서는 예외사항이나 특이한 문제만 관리함으로써 조세마찰과 저항의 소지를 없애며 세정민주화를 기할 수 있다.

② 신고납세제도의 운영요점

신고납세제도하에서는 법인의 자진신고로 납세의무가 일차적으로 확정되므

로 법인실무자의 상당한 수준의 세무처리 지식과 과세소득계산에 대한 자기계산능력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책임의식도 중요하다. 법인세부과절차상의 여러 사항을 법인의 자율과 자발적 행동에 맡기는 것이므로 결국 법인의 성실신고 이행의무가 커졌다. 이를 위해 성실의무불이행의 제재인 가산세 규정이 강화되었고 회계사나 세무사, 변호사 등 세정협력조직에 의한 납세지도와 과세대행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정부도 법인의 능력과 의식을 믿으면서 신의성실의 개념하에 상호 신뢰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③ 신고납세제도의 단점보완 행정관리

중전의 정부부과과세제도가 일시에 신고납세제도로 전환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다. 왜냐 하면 법인이 자진하여 세액확정계산절차를 수행하므로 납세의무자의 세액계산 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신고납세제도의 전제조건이 되고 또한 책임있는 납세의식이 뒤따라야만 그 기능이 원활히 수행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규정 이외에 법인종합관리규정과 많은 훈령고시 등을 통하여 납세자의 구체적인 세무자료제출이나 납세의무이행 문제에 대해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④ 정부부과과세제도

현행의 신고납세방법 이전에 적용되어 오던 정부부과과세제도란 정부가 행정력을 통하여 법인세부과금액을 결정하는 제도로서 설사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스스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더라도 정부의 조사결정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비로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과세방법이다.

정부부과과세제도하에서는 법인 스스로 신고와 납부를 이행하여도 법인이 수행한 신고절차는 법인세 확정을 위한 예비적 절차에 불과하고 그 후 반드시 정부가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납세의무가 종결된다(현재는 상속세·증여세 및 양도세 등 개인재산세 분야 등 일부에만 정부부과 제도가 적용되고 있음).

⑤ 신고납세제도와 정부부과과세제도의 비교요약

정부 등 국가 조직이 조세를 징수하기 위해 사용하는 신고납세제도와 정부

부과과세제도의 차이점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비교 요약된다.

구 분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납세제도	과세당국의 부과과세제도
개 념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	행정관청의 결정·처분으로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
제도의 민주·자발성		민주적, 능동적, 자발적 방법	전제적, 수동적 방법
조세채권·채무의 확정 방법	절차서류	신고서의 제출 및 신청·신고	조사, 결정, 납세고지, 통지, 처분, 고지서
	주 체 자	납세의무자 및 납세의무자대리인	정부(관할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장, 수납기관대리인
	확정시기	납세의무 및 신고서의 신고시	정부의 조사결정·경정처분시
탈루세액에 대한 조치		세액추징 가산세·가산금 처벌	세액추징
조세채권·채무의 안정성		신고서 확정되어 안정되며 예외관리	결정시까지 미확정되며 전체 관리
세 제 현 황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국세	기타 세목(지방세, 사용료대가 조세, 공부상조세)
조 사 권 의 성 질		정부의 순수권한, 선택적 행사	정부의 권한, 무조건적 행사, 동시에 의무임.
기간·소멸시효 등의 기 산 시 점		적법 신고기한 시점부터 기산 효력	정부의 조사결정시점부터 기산 효력
행 정·납 세 비 용		납세의무자의 납세비용 (인력·지식)	과세당국의 행정비용 (인력·절차)

⑥ 신고납세제도의하의 세무조사비제여부

신고납세제도라 하여도 정부의 과세권 행사와 관련된 절차적 업무만 법인납세자에게 자율적으로 이행하도록 위임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신고납세제도하에서도 정부는 일반적 질문조사권과 그에 따른 경정권은 항상 보유하고 있어 법인의 자진신고로서 확정된 과세표준이더라도 사후에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면 결정·경정 등의 방법으로 정부의 최종세금 부과금액에는 차이가 없도록 하고 있다.

2. 적법 과세표준신고를 할 대상법인 (법 제60조제3항)

1) 납세의무있는 모든 법인

① 납세의무의 최요건으로서 자발적 신고

본 법상의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영리·비영리 등 모든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대상 법인이 된다. 법인은 매사업연도 마다의 실적에 따라 이익이 나기도 하며 결손이 있기도 하고 과세소득이 영(0)인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과세소득이 양수(+)로서 세액이 계산되는 법인 뿐만 아니라 음수(-)로서 세액이 없는 법인도 신고하여야 적법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특히 당연도에 손실(-)이 발생하였다 하여도 이 금액은 향후 10년간의 이익(+)에서 상계되어 향후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잠재성이 있는 금액이므로 중요하다. 이밖에 당연도에는 이익이지만 종전의 결손이 있어 당연도 이익과 상쇄되어 결과적으로 (-)가 되어 납부할 법인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적법히 신고해야 해당 계산의 결손상태 등이 적법히 인정되는 것이다.

② 과세표준신고의 대상연도 범위

법인은 매 1년 단위로 신고하는데 중도폐업·청산하거나 합병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그때까지를 1사업연도로 하여 신고대상이다.

예를 들어 합병으로 소멸한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는 법인세 신고서 및 첨부 재무제표와 신문 공고 재무상태표상의 법인명칭과 공고인은 모두 소멸등기되었다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야 한다.

2) 법인에게 비과세 및 전액 면세법인의 신고여부와 불이익 적용배제

본 법 제2조의 납세의무자로 규정된 법인은 모두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한다. 특히 본 법 제76조는 법인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는 무신고가산세를 세액×20%의 세액기준과 수입금액기준계산액 중 큰 금액으로 부과하므로 법인세액이 산출되지 않더라도 무신고가산세가 부담되므로 무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 있는 법인도 신고는 하여야 하지만, 만약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는 않도록 다음의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 시행규칙 제60조 【가산세의 적용】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전액 면제 되는 소득만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4. 3. 5 개정)

따라서 이런 비과세 및 전액 면제법인도 자진신고대상이기도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른 조세법 차원의 불이익은 없는 것이다.

3. 과세표준 신고기한 (법 제60조제1항)

납세의무있는 모든 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적법 신고서가 제출 접수되지 않았다면) 그 후의 신고는 제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무신고로 보게 되고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감사미종결로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 연장신청방법으로 1개월 연장신고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1)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 모든 법인

모든 일반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적법한 신고가 되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 외부조정신고 대상법인

외부조정신고 대상법인도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본 법 시행령 제97조

제9항의 규정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가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8년까지는 결산종료일부터 60일까지를 결산확정일로 하고 그 날로부터 회사자가조정은 15일내에 세무사·회계사 외부조정은 30일내에 신고하도록 차등을 두었으나 99년부터는 자가조정·외부조정 모두 신고기한이 3개월 내라고 단일화되었다.

2) 법인에 신고기한의 연장

① 국세기본법상의 일반법인 신고기한 연장

국세기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법인의 신청(신청 후 10일 이내 승인통지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봄)에 의하거나 법인의 신청이 없어도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법정기한내에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법인세의 법정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장되는 기한이나 기간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연장여부 및 연장기한은 법인의 신청현황을 감안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 ②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 ③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한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2010. 1. 1 신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5.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기한연장과 분납한도】

①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2010. 2. 18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기한연장은 9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할 수 있다. (2010. 2. 18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기한이 연장된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기한연장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가능하면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균등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2010. 2. 18 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조 【기한연장의 신청】

법 제6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2010. 2. 18 개정)

1.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
3.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조 【기한연장의 승인】

-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제3조 각 호에 준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3조 전단에 따른 신청에 대해서는 기한 만료일 전에 그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2010. 2. 18 개정)
-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2010. 2. 18 개정)
 1.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전국적으로 일시에 발생하는 경우
 2. 기한연장의 통지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
 3. 기한연장의 사실을 그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② 법인세법상 신고기한 연장 특례(법 제60조제7항 및 제8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신고기한의 종료일 이전 2주가 되는 날까지 신고기한연장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연결법인의 경우 연결모법인이 신청서 제출)하여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신고기한이 연장된 내국법인이 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기한 연장일수에 금융회사 등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한 연장일수는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진 날(연장기한까지 신고납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연장된 날까지의 일수로 한다.

3) 법인세의 수정신고와 기한

국세기본법 제45조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당초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다면 법정 신고기한(사업연도 말일부터 3개월 말일되는 날 당초 실제 신고일이 아님) 경과 후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통지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삭 제 (94. 12. 22)

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II. 과세표준신고서 관련서류 (법 제60조제2항)

1. 과세표준신고서

- ① 필수적 첨부서류와 부속서류
- ◎ 필수서류 5가지 : 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제1호서식), ② 재무상태표, ③ 포괄손익계산서, ④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⑤ 세무조정계산서(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제3호서식)
- ◎ 부속서류 : 각종 세무조정계산서 관련 첨부서류(외부감사대상법인은 현금흐름표 및 원화재무제표 등도 제출함), 합병 또는 분할시 피합병법인의 재무상태표와 합병법인 등이 승계한 자산 및 부채명세서 및 관련 서류

②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일 : 직접 제출일 및 우편소인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과세표준신고서는 당해 법인의 관할세무서에 직접 제출함이 일반적이다. 원격지이거나 기타 임의적 판단에 따라 우편이나 다른 어떤 방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는데 신고의 효력에는 차이가 없다.

대부분 신고서 접수자체와 접수일에 대한 행정처리 불찰로 인한 분쟁소지를 없애기 위해 신고서를 한부 더 만들어 신고서 겹면에 세무서 민원실의 접수인(날짜 포함)을 받고 있다.

다음 국세기본법 규정은 우편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면 통신일부인(우편소인)이 찍힌 날을 신고일로 하며 통신일부인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날짜 파악이 불분명하면 발송한 날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날을 신고일로 본다. 그리고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세청전산망에 적정입력 완료된 날이 신고일이다.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 ①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과세표준수정신고·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따른 통신일부인(通信日附印)이 찍힌 날(통신일부인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걸리는 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 ② 제1항의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③ 과세표준신고서 관련규정

법인은 신고서 등의 서면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세액은 일반법인세와 자가급등지역의 양도소득법인세를 포함한다.

관련법령

① 시행령 제97조 **【과세표준의 신고】**

①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는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에 따라 법 제14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한다. (2008. 2. 29 개정)

2. 과세표준신고시 필수첨부서류

1) 신고요력을 위한 필수적 첨부서류

(1) 일반 신고시 필수적 첨부서류

① 신고요력을 유지하는 기본서류

모든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 중 신고의 법적 유효요건을 충족하는 필수적 첨부서류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및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다.

따라서 부속서류 이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첨부하지 않은 신고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는데, 이는 결국 신고의 효력없음을 간주한다는 의미이므로 본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여기서 필수서류로서의 세무조정계산서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이며 기타의 세무서류는 첨부되지 않아도 무신고가 아니다.

또한 2009년 귀속분부터 외부감사대상법인(자산 100억원 이상)에 한하여 현금흐름표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은 기능통화재무제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관련 시행령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① 시행령 제97조 【과세표준의 신고】

③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1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및 제5항제1호에 따른 현금흐름표(이하 이 조에서 “재무제표”라 한다)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이하 이 조에서 “기능통화재무제표”라 한다)를 말한다.

(2011. 3. 31 개정)

④ 법 제6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로 한다.

(2010. 12. 30 개정)

⑤ 법 제6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신고로 법 제60조제1항의 신고를 한 법인의 경우에는 부속서류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현금흐름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만 해당한다)

1의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한 경우 원화를 표시통화로 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능통화재무제표를 환산한 재무제표(이하 이 조에서 “표시통화재무제표”라 한다)

(2010. 12. 30 신설)

1의3.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한 법인이 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원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이하 이 조에서 “원화재무제표”라 한다)

(2010. 12. 30 신설)

2.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합병법인등만 해당한다)

가.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등의 재무상태표와 합병법인등이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승계한 자산 및 부채의 명세서

(2010. 12. 30 개정)

나. 합병법인등의 본점 등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피합병법인등의 명칭,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서류

⑥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서류가 신고내용의 분석 등에 필요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서면으로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0. 2. 18 개정)

② 재무제표의 확정증인요건

법인의 재무제표 등은 주주총회 승인 등으로 확정된 것만을 의미하므로 확

정된 결산서류가 아닌 것은 공식적인 결산서류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상의 참고자료로만 취급된다. 세법이 결산의 확정여부에 근거를 둔 이유는 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에 의해서 승인된 결산 및 결산서류만이 적법성을 부여받은 것이 되고 동시에 신뢰성이 있어 조세채권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③ **중간예납시 필수적 첨부서류**

중간예납시에는 전 사업연도 납부세액의 반을 낼 수도 있고 중간예납기간동안을 가결산하여 신고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작성되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은 작성될 수가 없다. 따라서 중간예납신고시의 당반기 가결산방식 신고시에는 중간예납세액계산서에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세무조정계산서를 필수적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2) 피합병법인 등의 법인세 신고시 필수적 첨부서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최종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위에 열거된 서류 중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의미가 없으므로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세무조정계산서를 필수적 첨부서류로 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 등의 재무상태표와 합병법인 등이 승계한 자산 및 부채명세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피합병법인의 잉여금이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어 잉여금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신고에 있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신고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필수적 첨부서류가 아닌 것으로 하고 있다.

관련법령

① **시행령 제97조 【과세표준의 신고】**

⑦ 법 제60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합병법인등의 본점 등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피합병법인등의 명칭,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2010. 6. 8 신설)

⑧ 법 제60조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최종사업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서류중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010. 6. 8 개정)

상기 시행령 제97조 규정상의 취지는 잉여금 승계여부라는 개념이 필수적 첨부서류인지의 판단을 위한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의미로서, 잉여금의 승계여부에 관계없이 피합병법인의 최종 사업연도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필수적 첨부서류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3) 장부 · 증빙서류가 소실된 경우

① 적법신고를 위한 필수적 서류의 첨부

장부 및 증빙서류가 소실된 경우에도 적법한 신고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필수적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필수적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는다. 필수적 재무제표인 포괄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등은 법인의 실제 상황과 관련없는 임의 혹은 허위자료이어서는 안되며 기업회계기준 등을 적용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또한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원화재무제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부 등 소실시 가산세의 감면 가능

법인이 장부소실 등의 경우에도 작성한 신고서가 적법한 신고로 간주되면 적법한 신고를 근거로 하지만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는다면 무신고로 본다. 무신고로 보면 추계할 수밖에 없는데 장부 등 멸실로 추계신고되더라도 가산세 등은 감면될 수 있다. 관련 국세기본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①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2. 18 개정)

1. 감면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2.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법 제48조제1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4) **필수적 첨부서류 음결시의 무신고여부** (법 제60조제4항)

① **무신고로 보는 경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적법한 신고의 최소 요건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등 5가지 서류이다. 따라서 이 중 어느 것 한가지 서류만이라도 흠결되면 무신고로 보지만 그 이외의 기타 부속서류는 설사 시일이 촉박하여 신고기한 이후에 제출하여도 무신고로 보지 않으며, 계속 미제출시는 관할세무서로부터의 보정요구대상이 된다. 본 항의 표현상이 법에 의한 신고로 보지 아니함이란 무신고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에 의거 법인세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는 의미이다.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

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2010. 1. 1 개정)

(5) 수익사업소득이 없는 비영리법인 (법 제60조제4항단서)

① 무신고로 보지 않는 예외의 경우

비영리법인은 본 법 제3조제2항각호에서 열거된 수익사업이나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므로 이러한 소득이 없으면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법인세를 신고할 의무나 필요가 없다. 따라서 과세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신고서 상기 5가지 서류를 모두 법정기한내에 제출하여야 적법한 신고로 본다. 그러나 본 항 단서는 본 법 제3조제2항제1호의 일반적 수익사업, 제6호의 계속적 행위대가의 수입이 있는 비영리법인만 상기 5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적법한 신고로 규정하고 있고, 그 이외의 경우는 본 조 제1항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만 제출하면 적법한 신고로 규정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배당소득·주식 등의 양도수입 및 고정자산처분수입 등의 일부나 전부만 있다면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세무조정계산서 등 4가지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무신고가 아니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만 제출하여도 적법한 신고로 본다. 물론 이 경우에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조차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가 되며 신고기한이 경과해서 내도 무신고가 된다.

2)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 (법 제60조제2항)

① 적법신고의 요건인 기업회계기준 준용 재무제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필수서류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등 3가지이다. 이들은 모두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작성한 재무제표(재무상태표 등)를 첨부하였다면 이는 필수서류가 빠진 것으로 보아 무신고로 보는 것이다.

② 기업회계기준의 전반적 준용

여기서 기업회계기준의 준용범위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나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재무제표 작성상 중요성이나 명료성 등 기업회계기준상의 기본적 회계처리개념을 크게 위배하지 않는다면 준용한 것으로 본다. 객관적인 자료나 증거에 의하지 않고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등과 같이 근본적 원칙에서 벗어난 경우라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반면에 법인이 자산을 재평가하고 동 재평가액과 재평가차액을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신설법인 이외의 법인이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당해 사업연도분과 직전 사업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연도분만을 작성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단, 99년은 당연도만 가능).

이밖에 허위로 작성한 재무서류를 첨부하였다면 적법한 신고서류가 아니며 무신고가 된다.

③ 전자신고시 기본재무제표 신고서류 간소화

법인세 전자신고제도 도입으로 기본재무제표로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등을 법정 서식화하여 규정하였다. 따라서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표준대차대조표·표준손익계산서와 표준손익계산서부속서류를 전산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기능통화재무제표·원화재무제표 및 표시통화재무제표 등을 서면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다음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97조 【과세표준의 신고】

- ⑪ 재무제표, 기능통화재무제표, 원화재무제표 및 표시통화재무제표의 제출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표준재무제표”라 한다)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3) 세무조정계산서 (법 제60조제2항제2호)

(1) 세무조정계산서의 개념과 범위

① 신고효력요건으로서의 세무조정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는 적법 신고효력을 위한 최소 요건인 5가지 서류의 하나이다. 즉, 적법한 법인세 신고서를 위해서는 ①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서 ② 재무상태표 ③ 포괄손익계산서 ④ 잉여금처분계산서 ⑤ 세무조정계산서의 5가지만 있으면 된다. 여기서 세무조정계산서는 각종 세무서류 중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만을 말하며 나머지 서류는 부속서류이다. 즉, 세무조정계산서의 부속계산서·명세서 등의 부속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정계산서만을 제출하여도 적법한 신고로 보며,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97조 【과세표준의 신고】

④ 법 제6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로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세무조정계산서의 범위 및 가감조정작성

세무조정계산서란 포괄적 의미에서 볼 때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세법규정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세무조정을 통일된 서식과 작성방법으로 행할 수 있도록 정형화한 계산서이다.

이는 시행규칙 제82조제3호의 별지 제3호서식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와 기타의 부속서류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

서는 제반 서식 중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만을 세무조정계산서라 부른다. 따라서 넓은 의미의 세무조정계산서를 말할 때 법인은 자기의 세무신고관련 정보현황에 맞추어 불필요한 것은 없애고 필요하면 추가할 수 있다.

③ 당기순이익과세 조합법인 등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의 규정은 조합법인 중 일부는 세무조정없이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인은 세무조정을 할 수가 없고 할 필요도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규정된 조합법인의 경우는 세무조정계산서를 필수적 첨부서류로 보지 않는다.

(2)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자

① 법인의 직접 작성

일반적으로 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는 당해 법인이 직접 작성한다. 그러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필수적으로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다음의 시행령이 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97조 【과세표준의 신고】

⑨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여야 한다. (2010. 6. 8 개정)

②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작성 및 서명날인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작성이라는 개념은 원래 이들이 조정계산서를 직접 쓰고, 조정하여 작성하는 것을 포괄하지만 대외적·법률상의 최

소요건은 이들의 서명 및 날인을 의미한다.

국세청장이 정한 외부조정신고대상 법인인데도 회계사나 세무사의 서명날인을 받지 않은 경우, 무신고까지는 아니라고 봄이 타당한데, 과세실무상 무신고로 보려는 경우도 있다.

가급적 외부조정자 서명확인을 받는 것이 세무조정계산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③ 세무대리인과 종합관리규정

국세청장이 정하는 외부조정신고대상법인에 대해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나 회계사의 요건과 필요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다음의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97조 【과세표준의 신고】

⑩ 제8항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의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10. 6. 8 개정)

▲ 시행규칙 제50조의3 【세무사】

① 영 제97조제10항에 따라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는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로 한다. (2010. 6. 30 개정)

② 제1항에서 “조정반”은 2명 이상의 세무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으로 하되, 조정반에는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세무사는 2개 이상의 조정반에 소속될 수 없다.

(2009. 3. 30 신설)

③ 조정반이 제1항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12월 1일 이후 설립된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은 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2009. 3. 30 신설)

④ 제3항의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연도의 12월 말일까지 신청인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2009. 3. 30 신설)

⑤ 지방국세청장은 조정반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009. 3. 30 신설)

1.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가 1명이 된 경우
2. 세무조정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4. 조정반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조정반의 구성원(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실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에 참여한 세무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구성원의 배우자가 대표이사 또는 과점주주였던 법인의 세무조정을 한 경우

4) 외부세무조정신고

(1) 외부조정신고서첨부법인의 유형

국세청이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하는 법인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되는 법인인데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된다.

- ◎ 전년도 매출액 70억원 이상 법인과 외부감사 대상법인
- ◎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상으로서, 조세특례적용 법인과 준비금잔액 3억원 이상 법인
- ◎ 납세수준이 비교적 타법인에 비하여 미흡한 경우로 2년내 설립된 매출액 3억원 이상 법인과 추계경정법인 등이 그것이다.
- ◎ 소급하여 3년내 합병·분할, 분할신설법인 등
- ◎ 국외사업장 보유법인이나 외국자회사소유법인 등

이밖에 법인의 임의선택에 따라 외부조정계산서를 자발적으로 첨부하고자 하는 법인도 해당된다.

(2) 외부조정신고대상법인 국세청고시

①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의 법인

다음의 시행령 제97조제9항은 국세청장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법령

● 시행령 제97조 【과세표준의 신고】

- ⑨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사

〔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여야 한다. (2010. 6. 8 개정)

이를 “외부조정신고대상법인”이라 하는데 1980년 10월 6일 처음으로 지정 고시한 이래로 계속 개정하였고, 2009년 3월 30일자로 시행규칙에 신설 후 개정되어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령

▲ 시행규칙 제50조의2 【세무사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법인】

① 영 제97조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은 제외한다. (2010. 6. 30 개정)

1.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법 제29조·제30조·제4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같은 법 제104조의5 및 제104조의8에 따른 조세특례는 제외한다)를 적용받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4.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5.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받은 법인
 6.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7.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8.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려는 법인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할 때에 해당 사업연도에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본다.

(2009. 3. 30 신설)

② 법인세 등의 조세특례를 받는 법인의 외부조정여부

당해 사업연도에 조세특례를 받는 법인도 외부조정 지정대상인데 이는 법률

상 공제·감면의 혜택을 받으므로 이의 정확한 계산과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어 외부조정하는 것이다. 참고로 외부조정신고대상법인 지정고시 별표 「조세특례의 범위」를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관련 법조항별로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① 법인세의 조세특례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상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법인⇒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소득공제(제16조), 연금저축소득공제(제86조의2), 우리사주조합원 소득공제(제88조의4), 개인신용카드사용분 소득공제(제126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법인⇒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제5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제7조의2),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목적 설비투자 세액공제(제11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제24조), 설비투자세액공제(제25조), 에너지절약투자 세액공제(제25조의2),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제25조의3),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제26조), 정규직 근로자전환 세액공제(제30조의2), 고용증대 세액공제(제30조의4), 근로자복지증진 설비투자세액공제(제94조), 지급명세서세액공제(제104조의5), 전자신고세액공제(제104조의8), 제3자 물류전환화주기업 세액공제(제104조의14), 해외자원개발사업 세액공제(제104조의15), 지방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제104조의18), 현금영수증사업자 부가세 세액공제(제126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상의 법인세를 감면·면제 받는 법인⇒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제6조), 제조업영위 중소기업(제7조), 중소기업지원 설비 손금산입특례(제8조), 기술이전소득 (제12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4조),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제18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8조의2),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제21조),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제22조), 고용유지 중소기업(제30조의3), 중소기업간의 통합(제31조 제4항), 법인전환(제32조 제4항),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제55조의2), 수도권외의 지역이전 중소기업(제63조), 법인 본사·공장의 수도권 생활지역 외 지역으로 이전(제63조의2), 농공단지 입주기업(제64조), 영농조합법인(제66조), 영어조합법인(제67조), 농업회사법인(제68조), 산림개발소득(제102조)

◎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세액을 이월공제받는 법인⇨공제세액의 이월공제(제144조)

◎ 법인세법상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제45조)

③ 준비금의 손금산입법인

상기의 외부조정신고대상법인 관련 시행규칙 제50조의2제1항제3호는 손금산입된 준비금 규모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잔액이 3억원 이상이면 외부조정대상지정법인으로 한다.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준비금이란 대차대조표상의 결산반영 계상금액 여부에 관계없이 세무조정계산상 손금산입한 것을 말한다.

④ 임의로 외부조정을 하고자 하는 법인

외부조정신고대상법인의 범위를 6차 개정시(1988년 12월 28일) 임의적용 법인도 가능토록하였다. 즉, 외부조정계산서를 임의로 첨부한 모든 법인도 외부조정신고가 가능한데 사전에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즉,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의 외부조정확인서명날인이 기록된 세무조정계산서를 접수하면 된다. 아무래도 조정계산서의 신뢰성이 높아져 실사대상가능성이 적다고 볼 수 있다.

(3) 외부조정계산서 첨부여부와 신고요력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 세무사·회계사 또는 변호사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계산서 의무조정대상 법인이 임의로 혹은 의도적으로 외부조정계서를 첨부하지 않고 법인이 직접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의 신고로 보지 않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외부조정대상법인이라면 반드시 회계사·세무사·변호사 등의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 및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5) 기타의 부수적 서류

신고서식상 중요사항은 과세표준의 신고에 있어서 준비금 등의 각종 손금산입 사항이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해당 규정상 제출하도록 정하여진 신고서나 신청서 등을 누락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인데 세무조정계산서에 부수되는 제반 명세서·계산서·부속표 등은 뒤의 「4. 세무조정을 위한 제반 첨부서류양식」에서 설명한다.

3.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보정요구 (법 제60조제6항)

① 보정요구의 개념과 효력

본 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이 적법하게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나 필수적 첨부서류와 기타의 부수되는 세무조정계산서에 미비나 탈루가 있으면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정요구는 그 성격상 적법한 신고에 의한 신고서나 그 첨부서류의 미비나 탈루를 보완하는 것이므로 보정요구에 불응하였다라도 신고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보정요구는 적법하게 신고한 신고서나 그 첨부서류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다면 보정요구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법인이 신고시 제출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필수적 첨부서류의 미제출로 인하여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세정협력과 납세지도의 차원에서 신고기한내에 보정요구에 준하는 요구를 하여 법인의 적법한 자진신고를 유도할 수 있다.

② 보정요구의 범위·사유 및 절차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정확한 계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뿐 아니라 대표자 서명날인 등의 조세협력의무사항이 미비되어도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 계산상의 미비 또는 탈루의 발견시는 언제라도 요구할 수 있고 경미한 사항이면 구두요구도 가능하나 서면으로 함이 대부분이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보정요구에 대한 법인의 보정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증거력 및 객관성

의 측면에서 명확하다.

4.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법 제60조제2항제3호 및 시행령 제97조제4항·제5항)

1) 과세표준신고서 부속서류

① 필수서류 ⊕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세액신고서, B/S, P/L, 잉여금계산서, 세액조정계산서 등의 5대 필수서류 이외에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부속서류가 일부 누락되어도 무신고는 아니다.

부속서류 중 일부는 법인의 상황에 따라 제출제외할 수 있으나 신고내용분석에 필요한 경우 관할세무서 등의 서면요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현금흐름표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는 외부감사대상법인(자산 10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현금흐름표를 법인세신고서 제출해야 한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 작성하는 법인은 원화재무제표·기능통화재무제표 및 표시통화재무제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제출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규정은 없다.

관련법령

① 시행령 제97조 【과세표준의 신고】

⑤ 법 제6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신고로 법 제60조제1항의 신고를 한 법인의 경우에는 부속서류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현금흐름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만 해당한다)

1의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한 경우 원화를 표시통화로 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능통화재무제표를 환산한 재무제표(이하 이 조에서 “표시통화재무제표”라 한다)
(2010. 12. 30 신설)

1의3.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한 법인이 법 제53조의2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원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이하 이 조에서 “원화재무제표”라 한다) (2010. 12. 30 신설)

2.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합병법인등만 해당한다)

가.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등의 재무상태표와 합병법인등이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승계한 자산 및 부채의 명세서 (2010. 12. 30 개정)

나. 합병법인등의 본점 등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피합병법인등의 명칭,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서류

⑥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서류가 신고내용의 분석 등에 필요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서면으로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0. 2. 18 개정)

⑦ 법 제60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합병법인등의 본점 등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피합병법인등의 명칭,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2010. 6. 8 신설)

②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시행규칙 제82조는 법인세 신고의 법적 효력을 위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세무조정계산서 및 기타의 부속서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각 해당 조문별 해설에서 반영한다.

2) 과세표준신고서류 및 세무조정검토 요령

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작성 및 확인검토 요령**

본 서식에서는 결산확정일, 신고마감일, 세율, 법인가분과 기타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기재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다.

◎ 결산확정일 ⇨ 그 일자를 표시함(99년부터는 의미 없음).

○ 하기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기 주주총회의 결산승인일

결산일 : 정기주주총회일 :

결산확정일 :

◎ 신고마감일 ⇨ 그 일자를 언급사항란에 표시함(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 인 경우 3월 31일이 최종마감일임).

◎ 재무상태표 공고(2001년부터 소급하여 법인세법상 재무상태표 공고의무 및

관련 가산세 폐지됨)

- 법인세 납세의무 있는 내국영리·비영리법인(수익사업에 한함)의 외부감사대상법인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내에 국내 일간지에 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 함(일요일·공휴일도 가능). 전년 자산총액 100억원 미만이면 신문공고불필요

신문공고일 :

- 성질이 유사한 과목의 통합공고나 상계공고는 적법한 공고로 봄.

◎ 법인세율

-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다음의 세율적용과세표준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과세표준 2억원 초과 : 2,000만원+과세표준 2억원 초과금액의 22%(2012년부터 20%)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조합법인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참조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1년 환산과세표준으로 세액산출

◎ 필수적 첨부서류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모두 비교식으로 작성해야 함.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는 주주총회 승인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안)과 달라진 경우에는 이를 첨부해야 함.

- 세무조정계산서

- 신청부 감면인 경우 감면신청서, 첫 사업연도인 경우 감가상각방법신고서와 재고자산평가방법신고서도 제출하여야 함.

-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영 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자 중 당해 법인과 해외거래가 있는 자가 있는 경우 규칙 제82조제1항제47호의 해외특수관계자 등과의 거래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다만 해외특수관계자와 행한 거래금액(매입액+판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거래금액이 큰 순서대로 3개의 해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

◎ 기타의 기재사항

- 기명날인 : 신고서에 법인의 대표자와 경리책임자가 직인과 함께 자필 서명날인해야 하고 외부조정계산서 작성시 조정반의 세무사·회계사 2인 이상의 서명날인이 필요함.
- 사업자등록번호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확인함.
- 납세지 : 사업장 소재지가 사업연도 종료후에 변경된 경우에 소정의 전출·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로부터는 변경된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 분 납 : 여부확인

②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 중 이자소득만 있는 법인인 경우는 본 법 제62조제2항에 의거 별지 제56호 서식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별지 제27호(갑)서식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조정명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③ 배당소득·주식 등 양도수입·고정자산 처분이익있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중 다른 사업수입이나 계속적 행위의 수입 및 이자소득 등은 없고 배당소득·주식 등 양도수입·고정자산처분수입만 있는 경우는 본 법 제112조에 의한 장부의 비치·기장의무가 없는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별지 제57호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만 첨부하여도 적법한 신고로 본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 시행규칙 제82조 【서 식】

- ① 법인세 및 법인세에 추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부터 제56호까지 및 제60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2011. 2. 28 개정)
55. 별지 제57호서식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법 제112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외의 비영리내국법인에 한한다)

④ 세무조정계산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및 이월결손금의 적정성과 각 신고조정계산의 정확성을 검토함.

◎ 직전 연도 신고서 및 결의서

직전 연도 법인세신고서, 경정결의서(신고일까지 경정결의가 되지 않았으면 직전 연도의 법인세 신고서·수정신고서와 최근연도의 경정결의서)의 사본을 구하고, 세무조정사항 등 각종 정보를 음미함.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계산

- 결산서상 당기순손익 :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손익
- 소득조정금액 : 별지 제15호 서식(②) 및 (⑤)란 합계액 이기
-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 제21호 서식(⑫)란 금액 이기
- 이월결손금 : 제50호(갑)서식 (⑨)란 금액 이기
- 비과세소득 : 제6호 서식(⑥)란과 (⑩)란의 금액 이기
- 소득공제 : 제7호 서식((110))란 금액 이기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의 공제순서

첫째, 이월결손금, 둘째, 비과세소득, 셋째, 소득공제액

○ 산출세액 계산

- 세율 : 각 세법의 규정에 따라 적용할 최고세율 하나만 기입

○ 납부할 세액계산

- 공제감면세액(ㄱ) : 제8호 (갑)서식의 ((150))란 이기
- 차감 세액 : 제2호 서식 부표 ((121))란 이기
- 공제감면세액(ㄴ) : 제8호 (갑)서식의 ((110))란 이기
- 가산세액 : 제9호 서식에 의해 기입(중간예납세액의 미납부가산세 합산계산)
-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 제8호 (을)서식 ((143))란 이기

◎ 이월결손금

-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가능. 단, 2008년 12월 26일 이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5년

- 이월결손금은 선입선출법 방식으로 공제
- 법 제18조제8호의 이월결손금 총당용 자산수증이익 및 채무면제이익 있는 경우는 동 금액만큼 이월결손금 소멸
 - 재평가적립금,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합병차익 등과 상계된 이월결손금은 소멸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
 - 비영리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결손금만을 뜻함.
 -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양자를 총괄하여 결손일 경우를 의미함.
 - 추계결정함으로써 그 이전 이월결손금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님.
 - 산업합리화에 따른 소득계산의 특례에 해당되는 것은 10년내의 사업연도까지 결손금 공제가능(종전규정 계속 적용에 유의)